

2022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실시계획

요 약

□ 감사개요

- 감사기간: 2022. 6. 20.(월) ~ 7. 1.(금) ▶ 10일간
 - ※ 사전조사: 2022. 6. 15.(수) ~ 6. 17.(금) ▶ 3일간
- 감사대상: 구 본청, 의회 및 소속기관
 - ※ 보건소는 자료 제출 및 감사 제외(코로나19 방역 대응)
- 감 사 반: 공공감사팀장 등 11명
- 감사범위: 2019. 1. 1. 이후 추진한 사무 전반
 - ※ 직전감사: 2019. 1. 14.(월) ~ 1. 25.(금) ▶ 10일간

□ 감사방향

-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·규제 발굴
- 적극행정 직원 보호 및 소극행정 엄정 문책
- 인·허가 관련 민원처리실태 중점 점검
- 안전한 부산을 위한 사전 예방 및 재해 대비
- 직전 종합감사·의회 지적사항, 언론보도사항 등 중점 감사



부산광역시감사위원회

[청렴감사담당관]

2022년 부산진구 정기종합감사 실시계획

I 감사근거 및 방향

① 감사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85조(국가사무나 시·도사무 처리의 지도·감독) 및 제190조(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)
-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 제3조(감사의 종류), 제4조(감사계획의 수립 등)
- 「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」 제2조(적용범위), 제4조(감사계획의 수립)
- 2022년도 구·군 및 공공기관 연간 감사계획

② 감사방향

-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·규제 개선 방안 마련
- 적극행정 직원 보호, 무사안일·소극행정 엄정 문책 및 관행적 업무 처리 근절
- 인·허가 관련 민원처리 실태 중점 점검
- 안전한 부산을 위한 사전 예방 및 재해 우려 요소 발굴
- 직전 종합감사·외부기관·의회 지적사항, 언론보도사항 등 중점 감사
- 외부전문가·시민감사관 참여,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 불편 사항 처리 및 다양한 분야 감사
- 수범사례·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유공 직원 표창 등

II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: 2022. 6. 20.(월) ~ 7. 1.(금) ▶ 10일간
 - 사전조사: 2022. 6. 15.(수) ~ 6. 17.(금) ▶ 3일간
- 대상기관: 구 본청, 의회 및 소속기관
 - 코로나19 방역 대응 집중을 위해 보건소 감사 제외

- 감사 반: 공공감사팀장 등 11명
- 감사범위: 2019. 1. 1.이후 추진사무 전반
 - ※ 직전 종합감사 : 2019. 1. 14. ~ 1. 25. ▶ 10일간

Ⅲ 세부 추진계획

① 감사 중점사항

- 주요업무 중점감사 대상
 - 계약의 관행적 분리발주, 업무추진비 관행적 집행, 인사업무 법령 위반 사례, 민원 처리 지연, 공사 준공 시 안전관리비 부적정 집행 등
- 규제개혁 관련 시민불편 해소 등 이행사항
 - 법령 근거 없는 서류 요구, 위원회 심의 지연 및 부정적 법령 해석 등
- 각종 법규 미준수 및 행정의 기본과 원칙에 반하는 사항
 - 법령 개정 등 법규에 어긋나는데도 관행화되어 방치하는 사례
- 예산 편성 기준 명확화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·책임성 강화
 - 장기근속·퇴직(예정)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편성여부
- 공무직·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 여부
-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및 생활 불편 등 취약 분야 점검
- 민간위탁사무, 각종 보조금·지원금 관련 사업 관리 실태 확인
- 지역경제 활성화 미참여 사례 및 공사발주 법령준수 여부
- 의회 요구사항, 언론보도 사항 확인 등
- 감사 시 반복되는 동일(유사) 지적사례 ▶ 문책수준 상향 조치

② 사전조사 실시

- 근거: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 제7조(사전조사 등)
- 조사기간: 2022. 6. 15.(수) ~ 6. 17.(금) ▶ 3일간
- 주요업무 및 집중감사 분야, 중점점검사항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 등을 통한 감사의 능률성 확보

③ 시민의견 수렴

- 근거: 「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」 제7조(시민의견 등 수렴)
- 의견수렴 안내
 - 기간: 2022. 6. 1.(수) ~ 6. 10.(금) ▶ 10일간
 - 내용: 감사대상, 감사요망사항 제출요령, 결과 통보 등
 - 방법: 市·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재, 보도자료 제공 등
- 감사요망사항 접수
 - 접수처: 市 청렴감사담당관, 부산진구 감사담당관
 - 접수방법: 市·부산진구 홈페이지, 접수처 직접 방문 등
 - 접수사항처리: 소관분야 감사반원의 적정성 등 검토 후 감사반영 및 감사정보로 활용
 - ▶ 가명·무기명 진정, 사익 추구 등 개인의 이해관계 관련 사항, 단순 민원,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,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,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제외
 - 감사결과 조치
 - ▶ 감사 지적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(개선) 등 조치
 - ▶ 감사 결과는 감사요망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

④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

- 근거: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외부전문가 등의 참여), 「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」 제5조(감사반 편성 등)
- 기간: 2022. 6. 23.(목) ~ 6. 24.(금) ▶ 2일간
- 분야: 미정
- 인원: 1명
- 활동 및 결과조치
 - 외부전문가가 지적 또는 권고한 위법·부당사항, 개선·수범사항은 市 감사반원이 최종 정리하여 전문가 의견으로 권고(제시)
 - 감사 참여 종료 시 감사 참여 결과서 작성 제출

⑤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

- 근거: 「부산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」 제3조(역할)
- 기간: 2022. 6. 27.(월) ~ 6. 28.(화) ▶ 2일간
- 분야: 각종 사업장, 공원, 주차장, 환경 등 주민생활 불편 분야
- 인원: 1명
- 활동 및 결과조치
 - 평상시나 감사기간 중 보고 느낀 점 문제점 도출, 개선방안 등 제출
 - 위법·부당, 개선·수범사항은 市 감사반원에게 자료 제공
 - 감사 참여 종료 시 감사 참여 결과서 작성 제출

⑥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제도 운영

- 근거: 「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1조(목적), 제16조(면책심사신청 제도 안내) 등
- 신청권자: 감사를 받은 공무원 및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
- 신청기간: 감사결과 처분 이전
- 면책요건: 공익성, 적극성, 무과실성, 절차적 정당성 충족 시
- 면책제외: 금품 수수, 고의·중과실, 무사안일, 직무태만, 특혜 제공 등
- 감사기간 중 면책심사 상담창구 및 현장심의회 운영, 면책 결정
 - 적극행정 면책 심사 대상 여부 및 문책 양정 적정 여부 상담

⑦ 감사결과 조치

- 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은 기관(부서)에서 신속 조치토록 통보
-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는 제도개선, 무사안일·소극적 업무 처리 관련자 등은 엄중 문책
- 열심히 일하는 우수 직원 발굴 표창 수여 및 사례 전파